#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4301

제안연월일: 2024. 9.

제 안 자: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 명	의안 번호	발의자	발의일	심사경과	
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	2200292	신성범의원 등 12인	'24.6.11.	상정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'24.8.26.)
				소위 심사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'24.8.27.)
	2200649	김윤덕의원 등 13인	'24.6.19.	상정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'24.8.26.)
				소위 심사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'24.8.27.)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4. 9. 5.)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# 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,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 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.

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2항).

#### 법률 제 호

#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4조제4항 중 "제22조제2항"을 "제22조제3항"으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2조(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	제22조(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		
항 등) ① (생 략)	항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		
	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		
	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		
	에게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		
	록증을 포함한다) 또는 그 밖의		
	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		
	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		
	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		
	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		
	<u>수 있다.</u>		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	
제34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	제34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		
	<u> </u>		
④ <u>제22조제2항</u> 의 규정을 위반	④ <u>제22조제3항</u>		
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			
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		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		